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22
----------	-------

발의연월일 : 2026. 7. 16.

발 의 자 : 김승원 · 김남근 · 박균택
김한규 · 김남희 · 임호선
서영교 · 김종민 · 전진숙
신정훈 · 이재관 · 김교홍
맹성규 · 이성운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에서는 주소불명 채무자에 대한 공시송달이 허용되지 아니하나(「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현행법에 따라 일부 금융기관이 업무·사업으로 취득·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시송달이 허용됨(제20조의2).

이는 처분문서 등을 통해 채권 소명이 상대적으로 명확한 금융기관이 약식절차인 지급명령 절차를 폭넓게 이용하게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이었음.

그러나 금융기관은 특례제도를 통하여 관행적으로 상환능력이 희박한 채무자에게까지 소멸시효 연장 목적 등으로 기계적인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있고, 그에 따라 경제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가 지나치게 장

기간 추심의 불안을 겪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행 특례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고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되(안 제20조의2 삭제),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년 유예하여 실무상 혼란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부칙 제1조).

법률 제 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제20조의2)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접수된 독촉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장 독촉절차에 관한 특례</u> <u>제20조의2(공시송달에 의한 지급 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업무 또는 사업으로 취득하여 행사하는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및 그 양수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 및 같은 법 제466조제2항 중 공시송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 <u>1. 「은행법」에 따른 은행</u> <u>2.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u> <u>3.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u> <u>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u> <u>5.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u>	<u><삭 제></u> <u><삭 제></u>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
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
협은행

6의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7.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
합중앙회

8.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9.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회사

10.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
른 기술보증기금

1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
른 신용보증기금

13.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
역조합·전문조합과 그 중앙
회

1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신용
보증재단중앙회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
국자산관리공사
17.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
사
1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제1호부터 제6
호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1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
사
19. 「주택도시보증법」에 따
른 주택도시보증공사
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
흥공단
2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
인시장진흥공단
2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
까지, 제6호의2, 제7호부터
제21호까지에 준하는 자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
- ② 제1항의 채권자는 지급명령

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청
구원인을 소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청구원인의
소명이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지급명
령을 할 수 없는 때에 그 일부
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어
채무자가 이의신청의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민사소
송법」 제173조제1항에서 정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